

임원인사규정

제 정 1997. 3.15 규정 제229호	2017. 4.26 규정 제863호
개 정 1999. 8.20 규정 제301호	2018. 3.30 규정 제922호
2001. 4.23 규정 제352호	
2002. 7.16 규정 제389호	
2005. 6.30 규정 제504호	
2011. 4. 1 규정 제670호	
2011. 7. 1 규정 제676호	
2012. 9.27 규정 제708호	
2013. 8.20 규정 제718호	
2014. 4. 1 규정 제739호	
2015. 8.10 규정 제7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말한다.

제2장 임면

제4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 및 감사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되, 이사장 및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1.4.1.)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고, 임명 시 경영목표, 책임과 권한,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등이 명시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며, 청렴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4.1, 2011.7.1)

③ 삭제 <2001.4.23>

④ 임원의 임면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특히, 공단 감사담당부서 및 각급 감사 기관에서 중징계(당연퇴직 및 해임) 처분요구하거나 이사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의원 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2011.4.1, 2013.8.20)

제4조2(임원의 직위해제) ①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임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3.30.]

제5조(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2001.4.23)

③ 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직제 규정이 정하는 이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⑤ 임원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다음 별표 2와 같다. (본항신설 2011.4.1)

제3장 복무

제6조(성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복종의 의무)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 또는 공단의 업무 감독기관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직장이탈금지) 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9조(친절, 공정의 의무) 임원은 친절,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의 의무)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임면권자나 업무상 감독자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그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2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근무시간 등)(2002.7.16 본조개정) ① 임원의 근무시간 및 출장에 대하여는 공단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② 임원의 휴가는 일반휴가와 유급휴가로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휴가는 연간 13일을 부여하되, 재임기간(연임 포함) 1년을 초과하는 때 1년마다 15일을 한도로 1일

씩 추가 부여하고, 이를 초과 사용시에는 무급휴가(초과 일수당 총연봉액의 365를 감액)로 한다. 단, 업무 여건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8.10)

2. 유급휴가는 공단 취업규칙을 준용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4.4.1)

제15조(공단에 대한 책임) 임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공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의2(교육훈련) 임원은 제3장 복무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렴, 조직관리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27]

제4장 보수

제16조(보수) 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연봉제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2001.4.23)

제5장 상벌

제17조(포상) ① 이사장은 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할 경우 포상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임원이 공단에 재산상 현저한 이익을 가져온 경우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문책)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 이행실적 부진 또는 계약위반으로 평가된 때에는 문책할 수 있다.(2005.6.30)

1.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19조(문책의 종류)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한다.

제20조(문책의 효력) ① 경고는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연봉제시행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1 을 감하여 지급하며, 당해 임기중 2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시 해임한다. (개정 2014.4.1)

- ②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주의 3회시 경고 1회로 간주한다.
- ③ 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21조(문책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대상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22조(문책양정기준) 임원의 문책양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4.1)

제6장 보직

제23조(인사관리)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임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8.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감사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감사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2001.4.2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7.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이사는 시행일 기준으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다.

부 칙(2011.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8.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연봉제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2015.8.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제22조 관련)(기존 별표를 별표1로 개정 2011.4.1)

임원 문책양정 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해 임 해 임	해임-경고 경 고	경 고 주 의	주 의 주 의
2. 복종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3. 직장이탈금지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6. 청렴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주 의	주 의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별표2> (제5조 관련) (신설 2011.4.1)

임원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 직 위 명 : 이 사 장

1. 담당직무

가. 법령 · 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
(서울시설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 제2항, 임원인사규정 제5조)

나. 대내 · 외적 관계 관련 업무

- 공단 담당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공단 내 · 외 집단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형성
- 대외적으로 서울시 · 의회, 관련 행정부처 및 타 공기업 · 민간기업, 시민단체, 고객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고, 대내적으로는 노동조합과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환경의 변화 분석 및 예측과 기업가적 안목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창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시민)만족 도출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이사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조직역량을 제고
- 사건 · 사고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마. 기타 관련 업무

- 신규 사업 영역의 개척과 선진 경영기법의 발굴 · 접목으로 조직 발전을 도모
- 갈등과 분쟁의 사전 해결을 위해 노력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업무

- 차원높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
- 시설물관리 및 공단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
- 환경변화에의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

나. 기타 수행 능력 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상당히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크게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제한 없음

○ 경력

- 기업경영 및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 미래지향적 비전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 경영혁신으로 공단 위상을 제고하실 분
- 기업경영과 조직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가지신 분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능력 : 국내 · 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직위명 : 감사

1. 담당직무

가. 법령 · 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의 경영에 전문적인 시견과 능력을 가지고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
(서울특별시서울시설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 정관 제9조 제3항)

나. 대내 · 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서울시 ·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 이익집단, 고객(시민)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끔
- 노동조합과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공단 회계 감사 및 내부 감사를 담당하며, 조직의 윤리성 및 사업수행 능력을 제고하여 조직의 건전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사건 · 사고의 예방과 사후관리에 힘씀
- 내 · 외 고객(시민)과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힘씀

마. 기타 관련 업무

- 선진화된 감사기법의 발굴 · 접목과 사건 · 사고의 시스템적 예방이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 등을 적절히 활용
-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도 힘씀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업무

- 해당 분야 전문기술에 대한 상당한 소양 보유
- 공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리더쉽, 문제해결능력 겸비

나. 기타 수행 능력 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상당히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약간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상당히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크게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크게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제한 없음

○ 경력

- 지방직영기업 등 관련분야 근무 경험자
- 공직 혹은 기업체 경영 경력자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
- 예산 및 회계분야 또는 경제분야 경험자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능력

- 국내 · 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
- 시설물 관리에 대한 기본 소양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직위명 : 임원

1. 담당직무

가. 법령 · 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 경영의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직제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관장
(서울특별시서울시설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9조 제3항, 정관 제9조 제2항 / 직제규정 제8조)

나. 대내 · 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서울시 ·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 이익집단, 고객(시민)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끔
- 노동조합과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이사장을 보좌하며, 직제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업무를 관장

라. 조직 내부관리 관련 업무

- 관장 업무에 있어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이뤄 조직원의 단결을 도모

- 내·외 고객(시민)과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힘씀

마. 기타 관련 업무

- 선진화된 경영기법의 발굴·접목
- 사건·사고의 예방, 사후관리에 노력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 내부관리 관련업무

- 기업경영 및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분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친화력 보유한 분
-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보유한 분

나. 기타 수행 능력 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상당히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크게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크게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제한 없음
 - 경력
 - 지방직영기업 등 관련분야 근무 경험자
 - 공직 혹은 기업체 경영 경력자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
 - 예산 및 회계분야 또는 경제분야 경험자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능력
 - 국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
 -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소양
-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